

## 2025년도 플랜트기자재 수출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

2025년도 플랜트기자재 수출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5월 30일  
한국기계산업진흥회 회장

### 1. 사업 개요

가. 사업목적 : 플랜트 기자재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고, 국제인증·벤더등록·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수출 및 수주 등을 촉진하고자 함.

\* 근거법 : 「대외무역법」 제32조(플랜트 수출의 촉진 등)

### 나. 2025년 지원유형

○ 지원 유형별 개요

지원유형	지원분야	지원내용
① 탐색형	수출상담회	○ 국내 전시회 참가 우리 플랜트기자재 기업과 연계하여 바이어 발굴 및 수출 촉진 기회 제공
	시장개척단 (오프라인 1회)	○ (오프라인) 해외 플랜트 기업 방문 및 공정견학 등
② 진입형	벤더등록·국제인증 · 기술자문 및 교육 지원 (10개사)	○ 기업수주 지원을 위한 벤더등록·국제인증·컨설팅 등

\* 탐색형 사업은 별도 추진될 예정이며, 진입형은 본 공고문에 따름.

## 다. 추진체계



## 2. 지원 내용

### 가. ❶ 수출탐색형(수출상담회, 시장개척단)

- 지원방식 : 전담기관 직접 수행
- 지원대상 : 플랜트기자재 수출기업
- 지원내용 : 수출상담회(1회), 시장개척단(오프라인 1회)
- 지원일정

내용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수출상담회 (2025 AMXPO 연계)												
시장개척단 (오프라인)												

- 수출상담회 : AMXPO 전시회(9.23(화) ~ 9.26(금)) 기간 중
  - 장소 : 킨텍스 1전시장
  - 내용 :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
- 시장개척단(오프라인) : 9월 말 (예정)
  - 대상지역(예정) : UAE(두바이) WETEX 전시회(9.30 ~ 10.2) 기간 중
  - 내용 : 현지 전시회 참가, 현지 발전사 및 관련 기업 시찰, 면담 등

나. ② 수출지원형(벤처등록·국제인증·기술자문 및 교육 지원 등)

- 지원방식 : 수혜기업 공모(민간경상보조)
- 지원대상 : 플랜트기자재 수출기업
- 지원규모 : 150,000천원(10개사 내외, 기업당 18,000천원 내외)
  - \* 사업기간 내,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  - \* 총 소요금액의 70% 이내, VAT 미포함
- 지원기간 : 예산 소진시까지
- 지원일정

내용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공고												
모집 및 평가 (소진시까지)												
결과보고 및 지원금 지급												
집행마감												

### 3. 지원제외 처리기준

- ② 수출지원형(벤처등록·국제인증·기술자문 및 교육지원) 사업에 한하여 아래의 지원제외 기준을 적용함.
- 공고내용 및 사업목적과의 부합성
  - 사업의 목적이나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기지원 사업과의 유사성
  - 신청기업이 신청한 내용이 기지원한 모듈과 차별화되지 않거나 신청기업이 기 수행한 사업 내용과 유사한 경우
-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  - 주관기관(수혜기업)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과 관련한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 중인 경우

○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

- 신청기업, 신청기관의 장,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구분	사전지원제외
검토 기준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업의 부도</li> <li>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li> <li>3.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li> <li>4.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li> <li>5.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(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.)인 기업. 이때,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</li> <li>※ 상기의 신용등급 'BBB'에는 'BBB+', 'BBB', 'BBB-'를 모두 포함함</li> </ul> </li> <li>6.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</li> <li>7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</li> </ol>
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
- 과학기술기본법,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
- 수행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「보조금법」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
  -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
  -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
- 유의사항
  -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일 경우 선정·협약을 취소함.
- 기타 공고시 정한 결격 요건에 해당하거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
#### 4. 사업신청 및 문의

가. 전달기관 : 한국기계산업진흥회(산업진흥본부 국제협력팀)

##### 나. 사업신청 및 문의

- 사업신청 : 사업신청서 등 작성 후 메일 송부
  - ※ 지원대상기업은 선정 시, 회계담당자 1인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하며, 지정된 회계 담당자는 e나라도움 內 사업 등록 및 정보 공시 필수
- 문 의 : 이메일 문의 권장
  - 국제협력팀 최운영 과장(02-369-7907, yychoi@koami.or.kr)
  - 국제협력팀 김정석 주임(02-369-7823, kimjs329@koami.or.kr)

별첨. 사업신청서·완료보고서 및 개인정보 이용·제공 동의서 등 1부. 끝.